

공유재산 (풍암매립장 부지)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 1999. 11. 24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9. 12. 18
- 라. 상정일자 : 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1999.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지적과장 기영도)

가. 제안이유

-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풍암매립장 부지)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년간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 1,460백만 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1,600백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수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므로서 앞으로 타 지역 매입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 인근 300m 이내가 월드컵경기장과 대형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악취 및 해충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풍암매립장 부지를 매수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화순)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음.
- 금번 매입하고자하는 풍암매립장 부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답34번지 등 25필지 면적 25,965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 종료 또는 폐쇄후 토지이용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95년도 부터 임차료를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지불하고 있고
- 풍암동 매립장 주변이 월드컵 경기장과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저해되므로 이에 따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 추진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라 판단되므로
-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상토지를 매수후 운동장 등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보전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 하심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12. .
제 출 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제안사유

-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풍암매립장 부지)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계획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년간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 1,460백 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1,600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수 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므로서 앞으로 타 지역 매입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 인근 300m 이내가 월드컵경기장과 대형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으로 악취 및 해충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풍암매립장 부지를 매수하고자 함.

□ 재산취득 승인 요청

-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85,835㎡(25,965평) 규모로 소요예산액은 약 1,600,000천원 (시비 : 800,000천원, 구비 :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소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취득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연도 번호	재산표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답, 임야, 목장 용지	풍암동 20번지 외 24필지	85.835 m ²	1,600,000 (사비 : 800,000 구비 : 800,000)	2000	풍암매립장 부지 매입	동구 장동 67-18 김종성 외 25명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 취득